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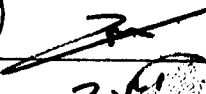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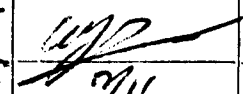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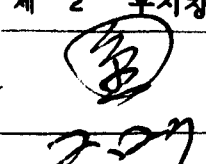



( R ) 필 요 불필요

자 체 통 제	기안처	계 획 구	전화번호	근 거 서 류 접 수 일 자
	김필교	김필교	361	
은 영 계 획 참 록	계 획 과 장	도 시 계 획 국 장	제 2 부 시 장	시 장
				
관 계	법 제 계	시 정 과 장	내 무 국 장	
관 서 명	문 서 계	총 무 과 장		
기 안 년 월 일	1964. 2. .	시 행 년 월 일	64. 2. 2	보 존 년 한
분 류 기 호	전 체 통 제	종 결		정 서 기 상
경 수 참 유 신 조	택 부 결 제	발 신		
제 목	서울 도시계획 소토 일부 변경 <del>추진</del>			
금번 서울도시계획 소토에 대하여 1963. 7. 1(건국시432)확정				
고시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덕성여자고등학교 및 입정동 주립으로 부터 일부				
변경요청이 있어 조사하면바 별지로서 하여 변경하여도 별지장없다고 사				
료 하옵기 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한번만 같이 조사하시지</i>				
사 유 번 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전 17	4" 89"	입정동 25	입정동 12	/ 현재 토목들이용면 포함.
변경후 17	4" 95"	"	"	
977				
변경전 30	6" 287"	사곡동97-5	안국동175-5	/ 동일소유지내임으로 변경 (덕성여고부지)
변경후 "	" 282"			

法制係 硯 函



64-5

*102*

1641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제 820 호

도시계획소토를 도시계획법 제3조 및 국경선 고시제 172호 (1962.6

15)에 의거 다음 토지구 같이 일부 변경한다. ~~관련법~~은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계획과 및 관공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사유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변경전	17	4 <sup>m</sup>	89 <sup>m</sup>	입정동 82	입정동 12	원재도토들이용 변경함.
변경후	"	"	95 <sup>m</sup>	"	"	변경연장 63

변경전	30	6 <sup>m</sup>	287 <sup>m</sup>	사곡동 97 약 5	안국동 175	동일소유지대입으로 변경 (덕성여고부지)
변경후	"	"	282 <sup>m</sup>	"	"	

1964. 3. 2  
 1962. 2. →

서울특별시시장 윤 치 영  
~~서울특별시시장 윤 치 영~~

"안2"

수신 | 수신처 | 참조 | 발신 | 서울특별시  
 제목 | 도시계획 소토 일부 변경

금번 도시계획 소토망중 일부가 별지고시문사본과 같이 변경

되었으니 금계도면을 비치하여 시민에게 종람케 할 것이며 •임무수행에 유  
무엇기를 기하시압.



유 점 1. 고시문 사본 및 금계도면 1부. 끝.

주 신 처

서청 1-2

"안3"

수 신 | 공보실장

| 발 신 | 도시계획국장

제 목 | 도시계획 소토 일부 변경

금번 별지공시문 사본과 같이 도시계획 가토가 일부 변경되었기  
지보에 게재하여 주심과 아울러 널리 시민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고시문 사본 1부. 끝.

『도시계획법 제 3 조 반칙』

제 3 조 (권한 위임) 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권한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지방장관이라한다)에게 위임 할수 있다.

105

사본

국건 보고서 172 호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의한 권한 위임.

도시계획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한 위임하고  
동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62. 6. 15.

국토 건설청장 조 성 근

1. 법제4조 단서 정비한 사항으로서

가. 가로망 계통을 유지하고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부분  
적으로 변경하는것.

나. 시설 도로 12 미만의 일부 확장 및 일부 축소 변경

2. 제5조2항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부 인가

3. 법제 6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행정청이 아닌자에 사업집행에 한함)

4. 법제 16조에 제1항에 의한 공고

5. 법제 28조 제12항에 의한 관계토지소유자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6. 법제 29조에 의한 인가 취소( 시장인가 사업에 한함). 끝.

106